제1878호

2022. 8. 18.(목)

발 행 인 : 영 등 포 구 청 장
편 집 인 : 홍보미디어과장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
전 화 : 02-2670-7556

영등포구보

고 시

· 제2022-126호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····· 2

공 고

· 제2022-14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·····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<http://www.ydp.go.kr(영등포소식→새소식→영등포구보)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(☎ 02-2670-7556 / 전송: 02-2670-3581)
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(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,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)

◎ 구보게재접수는 D-3일(월요일)까지 접수

D-3 접수	→	D-2일 편집 및 교정	→	D-1일 인쇄 및 제책	→	D일 보급 및 배포

영등포구

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
3180244-0073-2022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-126호
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 행정처분

우리구를 영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(대지조성) 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처분일자 : '22.8.18.(목)

2. 행정처분 내역

연번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처분내용	처분사유
1	㈜영화건설	손영복	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14, 지층 101-1호 (신길동)	영업정지 45일	주택법 제4조,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 14조 및 [별표1] 제2호 개별기준 카목 2)
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【☎02)2670-3658】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-1434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2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금고의 수: 단수금고
◦ 일반회계·특별회계(세입세출외현금 포함),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

2. 금고의 주요업무
◦ 시세,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◦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◦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
◦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3. 지정방법: 일반공개경쟁
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
◦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기관과 약정체결 진행

4. 약정기간: 2023. 1. 1. ~ 2026. 12. 31. (4년)

5. 신청자격: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,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영등포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

6. 신청절차
(1) 서류열람
- 열람기간: 2022. 8. 25.(목) ~ 2022. 9. 2.(금) ※ 근무시간내 09:00~18:00
- 열람장소: 영등포구청 본관 5층 재무과 사무실
- 비치서류: 2019~2022년 예산서 및 2019~2020년 결산서
※ 영등포구 홈페이지 상시열람가능

(2) 신청서(제안서) 접수
- 접수기간: 2022. 9. 5.(월) ~ 2022. 9. 13.(화) ※ 근무시간내 09:00~18:00
- 접수장소: 영등포구청 본관 5층 재무과 사무실
- 접수방법: 방문접수
- 제출서류: 종이서류 및 공문
  • 금고지정신청서 1부(원본)
  • 각서, 사용인감확인서, 법인인감증명서, 정관, 등기부등본 각 1부
  • 제안서 14부(원본1부, 사본13부)
  •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4부(원본1부, 사본13부)
  • 기타 영등포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
  ※ 제출서류 밀봉
  ※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 가 항 목	배 점
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25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20
3. 구민의 이용 편의성	18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8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	7
6. 그 밖의 사항	2

※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및 「금고지정 신청 안내서」 참조

8. 심사방법
◦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「3-다.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, 4.금고업무 관리능력(특히, 전산시스템 분야), 6-가.녹색금융이행실적”」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(※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)
◦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·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영등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

9. 약정 및 손해배상
◦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◦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영등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◦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◦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23.1.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음

10. 비용부담
◦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

11. 기타사항
◦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,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
◦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◦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
◦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영등포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영등포구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

12. 문의: 영등포구청 재무과(☎ 02-2670-3203)